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- 271호

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1조제2항·제3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, 제9조제1항, 제11조제1항,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·제3항에 의한 「건강보험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(보건복지부 고시제2016-229호, 2016.12.8.)를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

2016년 12 월 29 일 보건복지부장관

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 일부개정

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편 제2부 제2장 제4절 내시경, 천자 및 생검, 초음파검사료 [내시경] 중 '주: 4'를 다음과 같이 하고, '나-961 EX961 고실내시경검사'란 앞에 '나-799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'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분류번호	코드	분 류	점	수
		[내 시 경]		
		주 : 4. 나-762, 나-764에 내시경하 췌담도내점막세포		
		체취용 치료재료를 이용하여 Brushing을 하		
		는 경우 해당 내시경 점수의 20%를 산정한		
		다.(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2로 기재) 다		

분류번호	코드	분 류	점	수
		만, 내시경하 생검과 중복산정하지 아니한		
		다.		
나-799		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		
		Sedation Fee Gastrointestinal Endoscopy &		
		Bronchoscopy		
		주: 1 신생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60%를 가산하		
		며, 만8세 미만의 소아 또는 만70세 이상 노		
		인의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30%를 가산한다.		
		(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신생아는 1, 만8세		
		미만은 3, 만70세 이상은 4로 기재)		
		, ,		
		2. 18~09시 또는 공휴일에 응급진료가 불가피한		
		경우에는 소정점수의 50%를 가산한다.(산정		
		코드 두 번째 자리에 18시~09시는 1, 공휴일		
		은 5로 기재) 이 경우 해당 진정내시경을 시		
		작한 시각을 기준하여 산정한다.		
	EA001	가.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I	448	3.90
	EA002		651	1.32
	EA003	다.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Ⅲ	998	3.18
	EA004	라.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IV	1,38	0.47

부 칙

이 고시는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편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	제1편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
상대가치점수	상대가치점수
제2부 행위 급여 목록・상대가치점수	· 제2부 행위 급여 목록·상대가치점수 및
및 산정지침	산정지침
<신 설>	나-799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
	Sedation Fee Gastrointestinal
	Endoscopy & Bronchoscopy
	주: 1 신생아에 대하여는 소정점
	<u>수의 60%를 가산하며, 만8</u>
	세 미만의 소아 또는 만70
	세 이상 노인의 경우에는
	소정점수의 30%를 가산한
	다.(산정코드 첫 번째자리
	에 신생아는 1, 만8세 미
	만은 3, 만70세 이상은 4
	로 기재)
	2. 18~09시 또는 공휴일에
	응급진료가 불가피한 경
	우에는 소정점수의 50%
	를 가산한다.(산정코드 두
	번째 자리에 18시~09시는
	<u>1</u> , 공휴일은 5로 기재) 이
	경우 해당 진정내시경을
	시작한 시각을 기준하여
	 산정한다.
	EA001 가.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I

현 행	개 정 안
	448.90점
	EA002 나.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Ⅱ
	651.32점
	EA003 <u>다.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Ⅲ</u>
	998.18점
	<u>EA004</u> <u>라.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Ⅳ</u>
	1,380.47점